



제290회 거창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1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준]

〔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5. 11.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5. 11. 24.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각 기금별 기금 설치·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각 부서에서 설치·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거창군에서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거창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

3. 2026년도 기금개요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나. 운용방침

-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 특정 목적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정 재원을 목적에 맞게 관리하며, 일반회계가 갖지 못하는 유연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
- 자금 운용체계를 총괄부서와 운영부서로 이원화하여 책임성·투명성 확보
 - 총괄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운용부서 : 각 기금관리운용 과·직속기관·사업소
-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4. 기금운영 계획안 규모

(단위: 천원)

기금명	2025년도 말 조성액 ①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6년도 말 조성액 ④=①+②-③	증감
		수입 ②	지출 ③		
합계 (3개)	4,829,755	829,605	1,007,600	4,651,760	△177,995
재난관리기금	3,322,264	768,000	953,000	3,137,264	△185,000
옥외광고발전기금	372,826	29,268	34,600	367,494	△5,332
체육진흥기금	1,134,665	32,337	20,000	1,147,002	12,337

5. 검토의견

■ 재난관리기금(p83)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1998. 8. 18.(조례 제1481호)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며,
-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2024년도 법정 적립금은 일반회계 3년간 보통 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 이상(397,265천원)인 398,000천원을 적립한 금액임.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과 지출 계획은

(단위 : 천원)

수입계획				비고
항목	‘26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합계	4,090,264	4,252,253	△161,989	
전입금	398,000	381,000	17,000	
보조금	300,000	490,000	△190,000	
예치금 회수	3,322,264	3,311,253	11,011	
이자수입	70,000	70,000	—	

지출계획				비고
항목	‘26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4,090,264	4,252,253	△161,989	
비용자성 사업비	800,000	980,000	△180,000	
예치금	3,137,264	3,259,753	△122,489	
기타지출	150,000	10,000	140,000	

- * 재난안전관리에 재해위험지(하천, 도로, 세천 등) 정비공사(280,000천원). 재해위험지 정비공사(200,000천원), 가사저수지 보수 보강공사 (220,000천원), 폭설 대비 도로 제설자재 구입(100,000천원)
- * 재무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2,239,264천원),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898,000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5,000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145,000천원) 편성되었음.

○ 재해위험지(하천·도로·세천) 정비공사는 침수·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대표적 목적사업에 해당하여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되며 반복 침수지역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사업을 실시함이 타당할 것임.

-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는 풍수해 예방 목적의 정비로 재난관리기금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하여 실시해야 할 것임.
- 가사저수지 보수·보강공사는 노후 저수지는 붕괴 시 대규모 침수·인명 피해 우려가 있어 예방투자가 필수적으로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폭설 대비 도로 제설자재 구입은 폭설은 겨울철 대표 재난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제설자재 확보는 법령상 기금 사용 가능 범위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옥외광고발전기금(p93)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0. 3. 9. 조례(조례 제1967호)로 제정되었음.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과 지출 계획은

항목	수입계획			비고
	‘26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합계	402,094	365,966	36,128	
예치금회수	372,826	339,966	32,860	
이자수입	5,268	3,000	2,268	
기타수입	24,000	23,000	1,000	
국도비보조금				

항목	지출계획			비고
	‘26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402,094	365,966	36,128	
비용자성사업	34,600	8,600	26,000	
예치금	367,494	357,366	10,128	

- *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영에 불법광고물 예방 홍보품 구입(2,800천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간담회(1,800천원), 불법, 무연고 간판 철거(30,000천원)
- *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에 예치금(367,494천원)

- 불법광고물 예방 홍보품 구입은 불법광고물 예방을 위한 계도·홍보활동으로 기금 목적사업에 해당하며 연중 반복 민원과 단속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판촉성 홍보품이 아니라 불법광고 예방에 실효성 있는 홍보품이 되어야 할 것임.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지원 및 간담회는 불법광고물 감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광고산업 육성 및 업계 소통이라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함.
- 불법, 무연고 간판 철거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관을 개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금 목적사업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체육진흥기금(p101)

- 체육진흥기금은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에 따라 거창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5. 4. 2. 조례(조례 제 1358호)로 제정되었음.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과 지출 계획은

수입계획				비고
항목	‘26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합계	1,167,002	1,154,574	12,428	
예치금회수	1,134,665	1,118,039	16,626	
이자수입	32,337	36,535	△4,198	

지출계획				비고
항목	‘26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합계	1,167,002	1,154,574	12,428	
비용자성사업	20,000	20,000		
예치금	1,147,002	1,134,574	12,428	

- * 우수 선수 육성사업 등 지원(20,000천원), 체육진흥기금 예치(1,147,002천원)

- 체육진흥기금은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우수선수 육성 사업, 군민체육대회 개최,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에도 우수 선수 육성사업 2,000만 원 지원사업 외에는 여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
- 기금의 실질적 운용이 미흡하고, 사업 편성이 단일화되어 있으며, 대규모 잔액이 예치금으로만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

하면 기금 운영의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기금 존치를 원한다면 사업 활성화 및 중기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며, 이행이 어렵다면 조례의 존속기한(2027년)에 맞추어 기금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6.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1.6.>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 <개정 2016.1.6.>

▶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거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용도를 정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개선사업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4.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거창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2. 우수선수 육성 사업
 3. 군민체육대회 개최
 4. 도민체육대회 참가
 5.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 ②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액을 우선 집행하되 적립기금 원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